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09.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절차 등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조례 운용과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과 법률 용어 순화 반영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4조의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를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로 변경
- 다. 법률용어 순화를 반영, 조례 전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 (1) “기타”를 그 밖에”로
 - (2) “교부지령”을 “교부결정통지”로
 - (3) “타용도”를 “다른 용도로”
 - (4)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

3. 개정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09. 7. 23.~ 8. 12.(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 8. 18)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비를”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비를”로, “사용등”을 “사용 등”으로, “관리를 기함을”을 “관리를”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를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사업“이라 함은”은 “”보조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사업자“라 함은”은 “”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하는 것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를 “사업 중 「지방

개정법」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에 계기한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보조금등의 교부여부”를 “보조금 등의 교부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를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교부지령”은 “교부결정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지령서를”을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기재한 교부결정사항을”로, “발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교부지령서에는”을 “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통지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발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지령전에”를 “교부결정통지 전에”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타용도에”를 “다른 용도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내용변경등”을 “내용변경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당해연도내에”를 “해당연도 내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비를</u>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u>사용등</u>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u>관리를</u>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u>조례에</u> 사용 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조금</u>"이라 함은 <u>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u> 말한다. 2. "<u>보조사업</u>"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u>보조사업자</u>"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p>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u>정하는 바에</u> 의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비를</u>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u>사용 등</u>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u>관리를</u>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u>조례에서</u>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조금</u>"이란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u> 말한다. 2. "<u>보조사업</u>"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u>보조사업자</u>"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p>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u>정하는 것에</u> 따른다.</p> |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신청) ① (생략)

1. ~ 5. (생략)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 4. (생략)
-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전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 4.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건에서 보조사업

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별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교부지령)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부지령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별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교부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기재한 교부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통지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알려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

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이하 생략)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완성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

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이하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연도 내에 사업완성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5.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5.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